

기초생활보장 상담사 양성 스터디 자료집

본 스터디는 <비수급 빈곤층 권리찾기 프로젝트 BEYOND> 사업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현장상담을
담당할 기초생활보장 상담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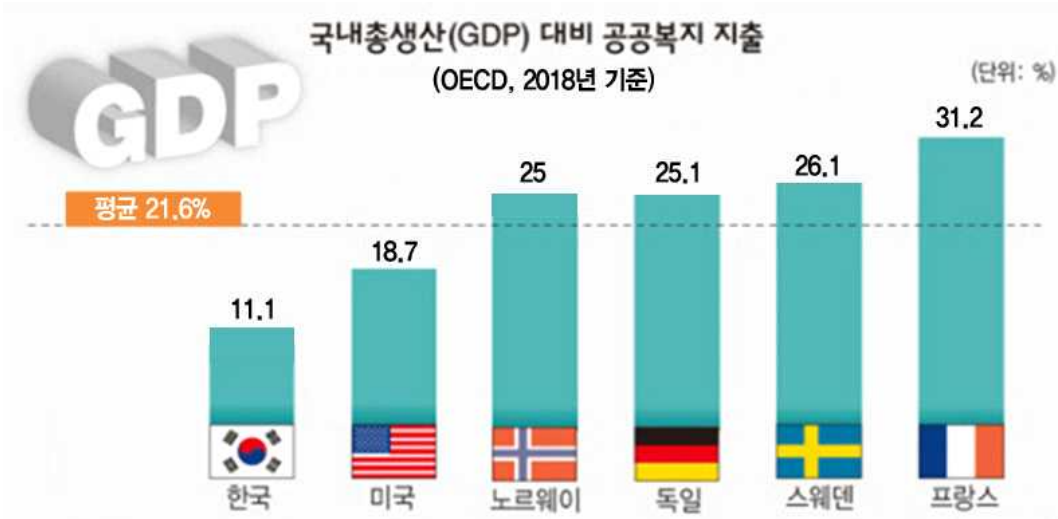
No.	주 제	세부내용	페이지
		목차	1
1장	기초법 짚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용어알기, 가구원수, 본인의 재산, 소득 기준 	2
2장	기초법 깊이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법정부양비 	
3장	사례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연습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인가?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 서식 : 상담기록지, 개인정보 동의서 	

1장 기초법 짚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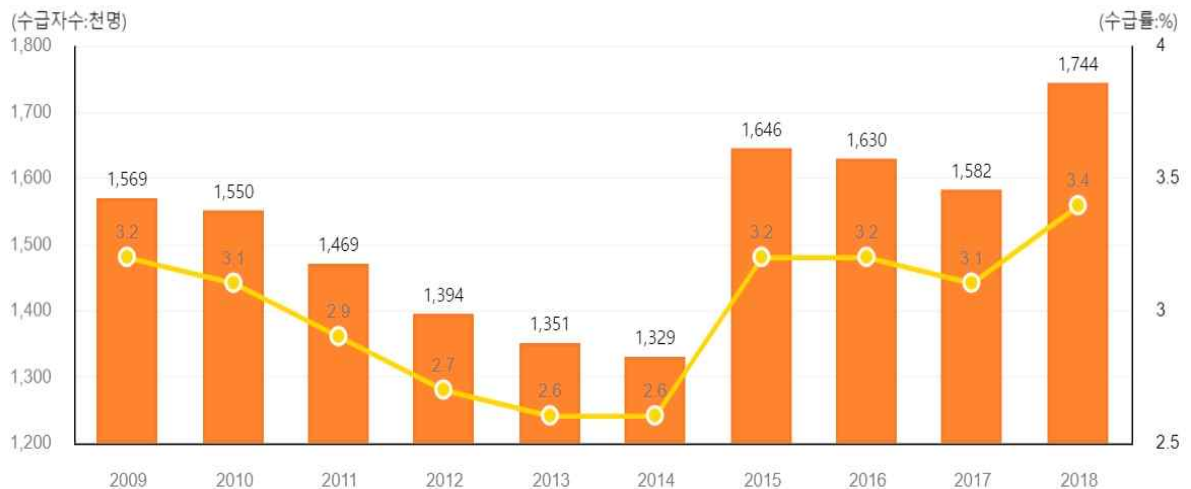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IMF 경제위기 이후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 빈곤계층의 사회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 짐.
-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골간으로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활동의 결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

1.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OECD, 2018)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3. 복지사각지대

[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연도	발굴 후보자 (A)	미지원 (B)	지원 종류						(신규) 과거수급 이력없음 (I)	비수급 빈곤층*** (J)
			소계 (C)	기초 생활 보장 (D)	차상위 (E)	긴급 복지 (F)	*기타 공공 서비스 (G)	**민간 서비스 (H)		
								(C)/(J)		
15년	114,609 12.3%	96,291 84%	18,318 2%	1,966	961	702	10,367	4,322 23.6%	5,530	930,000
16년	208,652 22.4%	161,872 77.6%	46,780 5%	3,064	6,573	719	20,278	16,146 34.5%	1,467	930,000
17년	298,638 32.1%	222,000 74.3%	76,638 8.2%	6,712	8,537	1,109	31,412	28,868 37.7%	3,403	930,000
18.7월	184,171 19.8%	130,649 70.9%	53,522 5.8%	3,290	3,749	953	19,246	26,284 49.1%	9,509	930,000
총계	806,070	610,812 75.8%	195,258	15,032	19,820	3,483	81,303	75,620 19,909 10.2%		

※출처: 사회보장정보원(2018) 분석자료 토대로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 (기타 공공서비스)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보육, 요양감면 등

**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2015년 기준)

4. 용어와 개념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국민 누구나.
수급자	급여를 신청하고 실제로 지급 받는 사람.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부채) X 재산별 환산율
기본재산	기본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공제해 주는 금액으로 지역에 따라 다름 (2020년에 변경됨)대도시 6,400만, 중소도시 4,200만, 농어촌 3,500만 (의료급여만) 대도시 5,400만 중소도시 3,400만, 농어촌 2,900만

부채	부채증명서 제출시 재산 산정시 공제해 주며 카드연체금, 대부업체 대출, 법원판결로 확인되는 사채는 인정되나 카드론(단기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제외
일반재산	4.17% 적용,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 기준)
금융재산	6.26% 적용.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주거용 재산	1.04% 적용. 주거용 재산 1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 (의료급여만 한도액이 1억원임). 예) 1억 4천만원의 주거용 재산이라면 초과하는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나머지 1억원 중 5,40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4,600만원을 1.04%로 환산.
생활준비금	긴급상황 시를 대비하여 수급자 가구가 보유해도 되는 재산(500만원)
공적이전소득	연금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소득(반대말은 사적이전소득)
확인소득 (추정소득)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경우 근로사실이 확인되면 잡는 소득(과거에는 추정소득이라고 해서 임의로 잡는 소득이었으나, 이에 따른 문제 때문에 용어가 변경됨). 1일 기준 68,720원(2020년도 최저임금 기준).
근로능력자 /무능력자	실제 근로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님. 근로무능력자는 1) 만 65세 이상 노인, 2)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3) 중증장애인, 4) 희귀·중증난치 질환자, 5) HIV 감염인 근로가 곤란한 자는 1) 미취학 아동의 양육자, 2) 가구원을 종일 간병해야 하는 자
무료임대소득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일정부분 소득으로 잡는다(주거급여에서 차감)
만성질환	3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
부양의무자	직계혈족 1촌 및 그 배우자. 자녀-부모와 사위, 며느리 포함.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1)

- 2015년 7월부터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소득 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다르다.
- 중위소득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등수를 매긴 뒤, 가운데 등수를 차지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 평균소득은 모든 소득을 더해 인구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름.

<2020년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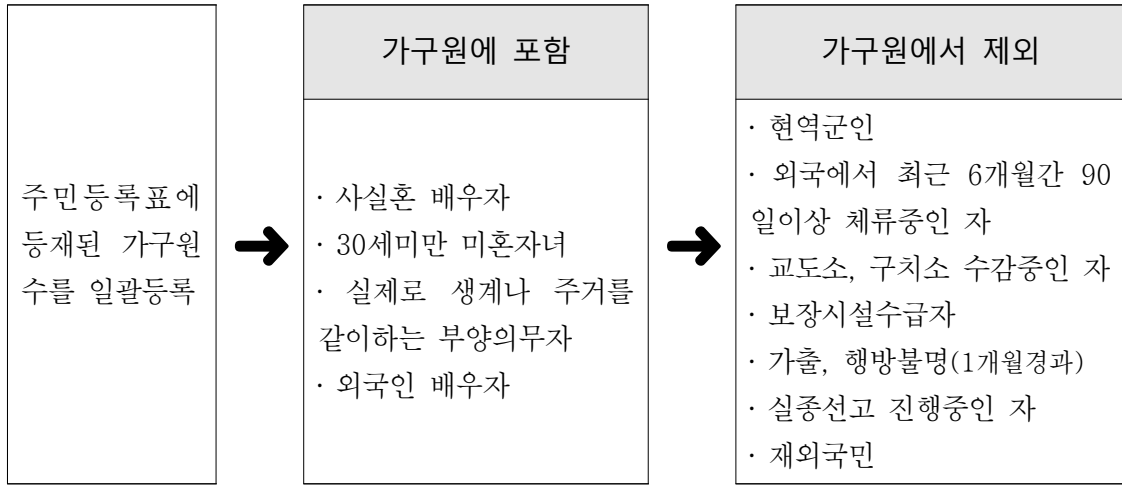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단, 교육/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2020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1. 가구원수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상 기재 되어있고,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



40대 부부와 아들1, 딸1(19세). 아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가구원수는?	3인가구
4인가구가 아버지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하게 되었다. 가구원수는?	3인가구
아들가구가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 가구에 35살 형과 28 살 동생이 함께 살고 있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는?	3인가구
3인가구가 수급신청을 하려고 한다. 큰딸이 최근 취직하여 직장 근처로 분가를 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2인가구
5인가구가 수급신청을 하려고 한다. 가구원 중 한명이 가출을 해서 가출신고를 했고, 1달이 넘었다.	4인가구

2. 소득인정액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1) 재산의 소득환산액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0.0417$$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금융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0.0626$$

(2)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름

구분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 2천만원까지 적용한다.

(3) 소득평가액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 공제}$$

3. 기본재산액

(단위: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유능력	6,900 (의료급여는 5,400)	4,200	3,500
근로무능력	10,000 (의료급여는 8,500)	7,300	6,600
부양의무자 가구	2억 2800만원	13,600	10,150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제외함. 기본적인 경조사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500만원까지는 통장에 있어도 재산에서 제외시켜 준다.

4.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

- (1)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는 인정 안 함.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저당권 설정 만으로는 부채 차감 안 됨**
- (3)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4)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 신용대출
- (5)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은행의 별도 확인이 필요함**)
- (6) 사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5. 소득의 종류와 공제

(1)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사전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2) 수급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범위

①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중위소득 2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일시적인 금품(재산으로 산정)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③ 보육, 교육비

: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의 장학금, 타인이 지원하는 교육비 중 30만원 이내

④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⑤ 1년에 6회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은 소득에서 제외한다.

(단, 총액이 중위소득 50% 미만일 때)

⑥ 국민연금 본인부담료의 75%는 소득에서 제외

⑦ 근로소득 공제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근로·사업소득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 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1945.12.31.이전출생자)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이하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지무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3) 보장기관 확인소득

추정소득에 대한 문제제기로 대체된 개념.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 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을 말함.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및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잡거나 소명기회가 없었던 경우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4) 지출실태조사표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 소득은 담당공무원이 지출실태조사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이때 작성한 지출은 곧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

(5) 사용대차

부양의무자나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 부분을 소득으로 인정함.

구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4급지 기준임대료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	A	94,800	104,400	125,400	143,400	149,400	174,600
•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	A×100%	94,800	104,400	125,400	143,400	149,400	174,600
•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 제3자 제공 전체	A×78%	73,944	81,432	97,812	111,852	116,532	136,188
• 제3자 제공 부분	A×20%	18,960	20,880	25,080	28,680	29,880	34,920

- 전체나 부분이나는 주방, 화장실 유무 등을 보아 종합적 판단. 예: 부모님택의 별채에 거주 중인데 주방, 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대차

- 미신고/미지원 시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은 제3자 제공 부분대차에 해당함.

6. 자동차의 재산환산

제 외	50% 감면	일반재산 취급	월 100%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 자동차 (경증장애인인 경우 일반재산 취급함)	생업용 자동차 1대 감면 후 일반재산으로 적용	①차령 10년 이상 1600cc이하의 자동차 ②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③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④대포차(운행정지 명령처분을 받아야 함) ⑤장애인소유의 승합차, 화물차 ⑥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 곤란한데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안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통해 일반재산 취급가능	그 외.

7. 별도가구 보장

(1) 보장시설수급자와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2) 가정해체 방지

: 원가구로 따지면 탈락하지만, 별도가구로 보았을 때 의료급여가 해당되

는 경우

- 조부모와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 형제 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정, 근로무능력자
- 결혼(이혼, 사별 포함, 사실혼 제외)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30세 이상 미혼인 중증장애인, 만성·중증 질환자

(3) 자립지원

만 18세~만 35세의 자녀가 수급가구에서 성장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동일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본다.

형제의 집에 장애인인 동생이 같이 사는 경우	별도가구
부모의 집에 거주중인 20대 미혼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아님
이혼 후 부모의 집에 거주중인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65세 이상인 어머니와 장애인인 자녀가 이모집에 전입하는 경우	별도가구 <u>2인가구</u>
A씨는 65세 이상이고, <u>한부모가정인 딸 가족</u> 과 사망한 아들의 아들(<u>손자</u>)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별도가구 <u>한부모가정</u> 1가구, 손자 1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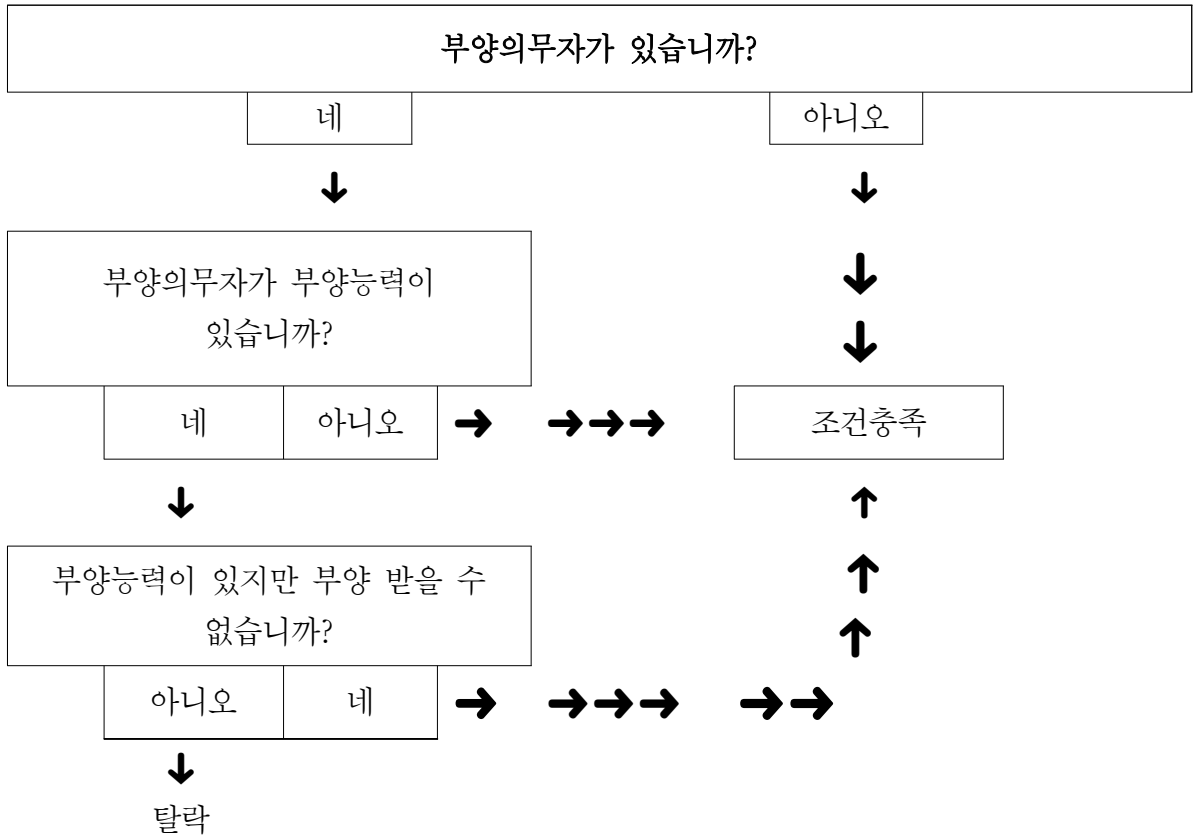
2장 기초법 깊이알기

1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 1촌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위, 며느리 포함)



2.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

- (1)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 (2)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만 34세 이하일 것. 34세 이상이면 제외(단, 근로무능력자인 경우 포함)
- (3)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더해서 산정한다(예: 부모와 중증장애인 자녀 1명이면 총 3명이지만 +1을 해서 4명으로 산정)

3.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 ① 자신의 주거에서 (조)부모,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
- ③ 자립지원 특례 적용중인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또는 295만원 이하일 것)
- ④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고&수급자 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⑤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이하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을 경우
- ⑥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의료급여는 적용×)
- ⑦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

* ①의 재산, 소득기준

- 1)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수급자 가구 중위소득의 합 40% 미만이어야 함
- 2)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함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1) 부양불능
 - ① 군복무 ② 해외이주 ③교도소 등 수용중인 자 ④실종신고 진행중인자
 - ⑤보장시설수급자 ⑥행방불명자(가출신고 후 1개월 경과자) ⑦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중인 아동

(2)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필요)

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 하여 중위소득 40%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한 경우: 이혼한 한부모 가구, 비혼모 가구의 아동, 장애인·한부모시설에서 퇴소한 수급자

② 가족관계 해체 : 이혼, 폭력, 유기, 학대 등 실질적인 부양 받지 못하는 상태,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직계존속과의 갈등으로 실질적인 부양 받지 못하는 상태

③ 양자, 양부모 관계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3)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등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채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4)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정,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5)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만 적용)

부양의무자 소득이 834만원 이하(교육비, 의료비 미반영)이며 재산이 9억 이하(부채 미적용)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같이 살면서 별도가구로 보장받고 있는 경우는 원래의 기준 적용함.

가족관계 단절→“해체” 용어 변경

가족관계 해체의 인정은 보장기관의 재량행위임. 지금까지 전화연락과 방문만으로 부양을 판단하는 지나친 엄격한 제도운영이 있었기에 단절보다는 순화하여 합리성을 높임.

5. 부양거부 기피의 경우

(1)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중위소득 40%이하의 생활을 하는 경우

- ① 수급자 자녀가 19세 미만이고, 그의 보호자인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② 수급자 가구가 미혼모(부) 가구이고 친생부(모)가 아동의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 ③ 장애인· 한부모시설 등에서 퇴소한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 기피 하는 경우 등

(2)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소명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양자 양부모 등 비혈연 관계를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이런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여부를 심의하며, 보장비용 징수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보통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데 **아래의 경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생략할 수 있음.**

(1) 과거 학대, 이혼, 가출, 약물중독, 미혼출산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공문 송부 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부양의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 유선 또는 공문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를 상담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

※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입 퇴소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퇴소 전 시설장의 의견서 등을 참고해서 판단가능.

수급(권)자 제출자료

■ 기본자료

- ① 소명서(수급(권)자 작성)
- ② 사실조사보고서(통합조사관리 담당공무원 작성)
- ③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공부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 ④ 지출실태조사표
- ⑤ 최근 1년간 수급(권)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
 - * 부정수급 신고 등 추가 확인 필요시 1년이상 통장 입출금내역 추가자료 요구가능

■ 추가자료(담당자 판단)

- ① 부양기피사유서(부양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 요청, 부양의무자 작성)
- ② 가출(실종)신고서,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및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신청서 등 부양거부·기피·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과거에는 1년간 통화기록을 떼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사생활 보호 원칙에 의거하여 제출하지 않는 점에 주의.

* 소명의 경우, 초기상담이 중요하며 타당하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

* 동반출입국 내역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단지 그 정보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함.

6.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부양능력 있음	
(A*40%)+(B*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부양능력 미약 (생계급여: 10% 의료급여는 30% 또는 15%)	부양능력 있음
B*100%	부양능력 없음	
	(A+B)*18%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

- ① 사적이전소득
- ②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실업급여, 산재보험금, 직업훈련 수당
- ③ 국가유공자 급여
- ④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 ⑤ 아동양육비, 양육보조금, 육아휴직급여(수당), 아동보육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⑥ 한센인생활지원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금
- ⑦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⑧ 국제경기대회 입상자의 연금
- ⑨ 쌀소득직불금
- ⑩ 이,통장 등 직책수당

(2)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부분(본인 소명 필요)

- ① 대학생학비
- ② 의료비, 간병비
-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액
- ④ 압류소득
- ⑤ 주거용 월세
- ⑥ 농어민 대출 이자비용 50%
- ⑦ 국민연금 본인부담분의 75%
- ⑧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 ⑨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된 양육비 지원액

7. 부양의무자의 월세는 소득에서 공제

- ① 해당건물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이며
- ② 다른 주거용재산이 없고
- ③ 계약서 상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월세 공제 상한액】

(단위 : 원)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504,000	430,000	331,000	2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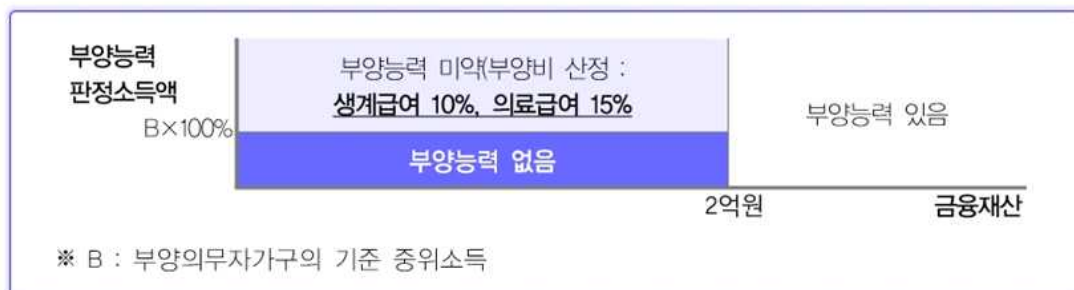
※ 1급지 : 서울특별시, 2급지 : 경기도·인천광역시, 3급지 :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세종시, 4급지 : 그 외 지역

8. 부양의무자의 재산

구분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기본재산액은 2억 28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부채의 산정은 수급자와 동일.
- 혼인(이혼, 사별, 미혼모 포함)한 딸의 경우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재산기준 충족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혼인한 딸 등)】



9. 부양비

부양능력 미약구간인 경우, 부양비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이기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일정부분이 자동으로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힌다.

법정부양비 계산식=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의 중위소득) × 부양비 부과율

(1)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비 부과율이 모두 10%이다

과거 아들, 미혼딸은 30%, 혼인한 딸은 15% 였는데 올해 통일되었다.

(2) 부양비가 제외되는 경우

①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중인 부양의무자

② 둘 이상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한쪽만 부과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부양의무자

④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이혼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수급자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3) (의료급여) 부양비 적용이 15%인 경우

① 혼인한 딸과 친정부모 간

② 자립지원 특례 적용자

③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고 수급자 가구가 취약계층(한부모,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인 경우

④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재혼한 부모, 배우자가 실종상태인 사위/며느리

=> 이외에는 의료급여는 모두 부양비 적용이 30%

10. 2020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20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단위 : 원)

수급 (권)자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없음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1인	미약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	~	~	~	~
	2,460,072 (2,600,647)	3,694,858 (3,694,858)	4,573,455 (4,573,455)	5,452,052 (5,452,052)	6,330,649 (6,330,649)	
있음	2,460,072 (2,600,647)	3,694,858 (3,694,858)	4,573,455 (4,573,455)	5,452,052 (5,452,052)	6,330,649 (6,330,649)	
2인	미약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	~	~	~	~
	2,953,986 (3,514,389)	4,188,772 (4,428,130)	5,067,369 (5,078,292)	5,945,966 (5,945,966)	6,824,563 (6,824,563)	
있음	2,953,986 (3,514,389)	4,188,772 (4,428,130)	5,067,369 (5,078,292)	5,945,966 (5,945,966)	6,824,563 (6,824,563)	
3인	미약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	~	~	~	~
	3,305,425 (4,164,551)	4,540,211 (5,078,292)	5,418,808 (5,728,454)	6,297,405 (6,378,616)	7,176,002 (7,176,002)	
있음	3,305,425 (4,164,551)	4,540,211 (5,078,292)	5,418,808 (5,728,454)	6,297,405 (6,378,616)	7,176,002 (7,176,002)	
4인	미약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	~	~	~	~
	3,656,864 (4,814,712)	4,891,650 (5,728,454)	5,770,247 (6,378,616)	6,648,844 (7,028,778)	7,527,441 (7,678,939)	
있음	3,656,864 (4,814,712)	4,891,650 (5,728,454)	5,770,247 (6,378,616)	6,648,844 (7,028,778)	7,527,441 (7,678,939)	
5인	미약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	~	~	~	~
	4,008,302 (5,464,874)	5,243,088 (6,378,616)	6,121,685 (7,028,778)	7,000,282 (7,678,939)	7,878,879 (8,329,101)	
있음	4,008,302 (5,464,874)	5,243,088 (6,378,616)	6,121,685 (7,028,778)	7,000,282 (7,678,939)	7,878,879 (8,329,101)	

* () 안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 부양능력판정 미약은 없음과 있음 금액 사이

-2020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금액 기준) (단위:원)

'20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금액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수급(권)자(가)와 부양의무자(가)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18%로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18%]의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임
-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기본재산액은 포함)하고 남은
 순재산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액 미만인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 원)

수급 (권)자	부양 의무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1인	대도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632,590	854,851	1,012,999	1,171,146	1,329,294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58,412,973	269,098,621	276,701,864	284,305,108	291,908,351
	중소 도시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88,825,946	310,197,242	325,403,729	340,610,215	355,816,702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66,412,973	177,098,621	184,701,864	192,305,108	199,908,351
	농어촌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6,825,946	218,197,242	233,403,729	248,610,215	263,816,702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31,912,973	142,598,621	150,201,864	157,805,108	165,408,351
2인	대도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854,851	1,077,113	1,235,260	1,393,408	1,551,555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69,098,621	279,784,269	287,387,513	294,990,756	302,593,999
	중소 도시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10,197,242	331,568,538	346,775,025	361,981,512	377,187,998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77,098,621	187,784,269	195,387,513	202,990,756	210,593,999
	농어촌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18,197,242	239,568,538	254,775,025	269,981,512	285,187,998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42,598,621	153,284,269	160,887,513	168,490,756	176,093,99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83,697,242	205,068,538	220,275,025	235,481,512	250,687,998

수급 (권)자	부양 의무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3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012,999	1,235,260	1,393,408	1,551,555	1,709,703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76,701,864	287,387,513	294,990,756	302,593,999	310,197,24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25,403,729	346,775,025	361,981,512	377,187,998	392,394,485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84,701,864	195,387,513	202,990,756	210,593,999	218,197,24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33,403,729	254,775,025	269,981,512	285,187,998	300,394,485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50,201,864	160,887,513	168,490,756	176,093,999	183,697,242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8,903,729	220,275,025	235,481,512	250,687,998	265,894,485	
4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171,146	1,393,408	1,551,555	1,709,703	1,867,850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84,305,108	294,990,756	302,593,999	310,197,242	317,800,486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40,610,215	361,981,512	377,187,998	392,394,485	407,600,971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2,305,108	202,990,756	210,593,999	218,197,242	225,800,486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48,610,215	269,981,512	285,187,998	300,394,485	315,600,971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57,805,108	168,490,756	176,093,999	183,697,242	191,300,486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14,110,215	235,481,512	250,687,998	265,894,485	281,100,971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329,294	1,551,555	1,709,703	1,867,850	2,025,998
	대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91,908,351	302,593,999	310,197,242	317,800,486	325,403,72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355,816,702	377,187,998	392,394,485	407,600,971	422,807,458
	중소 도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99,908,351	210,593,999	218,197,242	225,800,486	233,403,72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63,816,702	285,187,998	300,394,485	315,600,971	330,807,458
	농어촌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165,408,351	176,093,999	183,697,242	191,300,486	198,903,729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			229,316,702	250,687,998	265,894,485	281,100,971	296,307,458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다.

	1급지(서울)	2급지(수도권)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 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전세가구인 경우, 보증금을 월 4%로 환산한 후 월세를 합하여 산정(예. 1,000/20인 경우 약 23만원).
- 자가가구인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3장 사례연습

1

본인의 소득, 재산 연습

(1) A씨는 7,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유일한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 가액이 1억 2천만원인 주택을 유일한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3) B씨는 1인가구이며 중증장애인이다. 9,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는데 수급신청 시 문제가 될까? 만약, 그 중 5,500만원이 금융 재산이라면 소득환산액은 얼마인가?

(4) C씨는 미취학아동인 딸과 살고 있다. 마트에서 일을 해서 70만원의 소득이 있다. 딸이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매월 10만원의 의료비가 지출된다. 7,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인 이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된다면 생계급여는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

함께 풀어보기

(1) 전세보증금 7,000만원-기본재산액 6,900만원=100만원
남은 100만원*0.0104=약 1만원

(2) 주거용재산인 경우, 1억 2천만원까지는 1.04%로 환산한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1억원까지).
(12,000-6,900)*0.0104=약 53만원

(3)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1억원까지 기본재산액으로 본다.
1억원이 초과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취급.
그러므로 B씨의 9,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은 아예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제외가 가능하지만, 한가지 조건이 더 있다.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하”
만약, 금융재산이 5,400만원이 초과하면 특례적용×

9,500-6,900=2,600 남은 게 모두 금융재산이기 때문에, 6.26%의 환산율을 적용하면 2,600*0.0626=162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4) C씨는 2인가구, 매월 지출되는 의료비는 소득에서 차감하여 6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전세보증금 7,000만원-기본재산액 6,900만원=100만원

남은 100만원*0.0104=약 1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60만원 + 1만원

총 61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고, 2인가구 급여기준선은 89만원이므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단, 생계급여의 경우 89-61=28만원만 받을 수 있다.

(1) 두 아들과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의 A씨. 최근 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어 월 185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일까?

(2) B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남편, 자녀2이 있다. 남편이 최근 사업상 베트남에 갔는데 일하고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1억이 유일한 재산이며, 150만원 정도를 버는데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수급신청을 하려고 한다.

(3) C씨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월 소득이 180만원이다.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아들은 장애인이다.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

(4) D씨는 큰아들이 이혼 후 말긴 손자와 함께 살고 있고 아들은 돈 벌러 나간 후에 소식이 없다. 작은아들이 생활비로 50만원을 준다. D씨와 손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5) E씨는 혼자사는 중증장애인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월 2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소득으로 잡힐까?

함께 풀어보기

(1) 수급가구에서 자란 A씨의 아들은 분가하지 않더라도 ‘자립지원 특례’에 의해서 **별도가구**로 볼 수 있다. 단, 여전히 부양의무자이므로 소득의 일정부분이 법정부양비 즉,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잡힌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 * 10\% \\ (185 - 175) * 10\% = 1만원$$

3인가구 생계급여 116만원에서 -> 2인가구 생계급여 89만원
그리고 부양비 1만원이 차감되어 88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2) B씨는 5인가구인데 남편이 최근 6개월간 90일이상 해외 체류중이라면 가구원수가 4인가구가 된다.

1억은 주거용재산으로 볼 수 있기에,
 $(10,000 - 6,900) * 0.0104 =$ 약 32만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그 외에도 150의 소득이 있으므로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은 182만원.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전세보증금 8,000 - 기본재산액 6,900) * 0.0104 =$ 약 11만원
 $180 + 11 = 191$ 만원 교육급여만 수급 가능하다.

(4) 2인가구로 수급이 가능하다.

(5) 연 6회미만의 소득은 비정기적인 소득으로 보고 잡지 않는다. 이때 총액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20만 * 4회 = 80$ 만원
1인가구 중위소득 175만원의 50% 미만이므로 괜찮다.

(1) (A씨)혼자 사시는 친정 엄마가 작년까지 수급 받았는데 올 해 탈락했습니다. 알고보니 남동생이 돈을 벌고, 남동생의 부인도 소득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각각 185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동생은 법적절차 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이혼을 준비중이고요. 이혼하면 다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B씨)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30대의 미혼 중증장애인입니다. 부모님은 2억 아파트에 소득이 월 400정도인데요. 지금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 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 이제 저도 자립을 준비해야 하고,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3) (C씨)이혼하고 아이셋 데리고 사는 한부모입니다. 아이 아빠가 여전히 아이들의 부양의무자라고 하는데 맞나요?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부양비도 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안 된다고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D씨)저희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수급신청을 하려고 하니, 아들이 넷이나 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장녀이지만 자녀들 키우기도 벅찬 상황이고 동생들도 어려운 처지라서 여건이 되지 않아요. 자녀가 많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울까요?

함께 풀어보기

(1) 수급자 가구가 1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가 2인일 때, 소득이 369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에서 탈락한다. 이 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출하면 인정된다. 이는 직권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혼한다면 수급자 1인/부양의무자 1인 이므로 미약구간에 든다.

(소득 185-중위소득 175)*10%=1만원이 부양비로 잡힌다.

(2) 우선, 부모님과 함께사는 30대 이상의 미혼 중증장애인은 같이 살아도 별도가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특례 적용시 부모님의 소득, 재산이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를 살펴보면, 수급자 1인/부양의무자 2인 시 369만원이라는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에 걸려서 수급이 되지 않지만, 따로 사는 경우 834만원 이하(교육비, 의료비 미반영)이므로 가능하다.

(3)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혼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0%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명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다.

(4) 자녀들의 부양비를 모두 합산해서 2인가구의 선정기준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1) A씨는 1인가구이며 최근 지병이 악화되어 실직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이다. 재산은 전세보증금 6천만원이 유일하다. A씨의 부모님은 2인가구이며 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며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어머니도 청소일을 하시며 월소득이 180만원이다. 이런저런 만성질환이 있으셔서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월 20만원정도 지출이 된다.

재산은 2억원의 자가주택이 유일하다. A씨는 수급을 받을 수 있나?

(2) B씨는 중증장애인 부부이다. B씨의 부모님은 B씨의 누나(35세)와 함께 거주중이며, 소득이 700만원이다. 가구원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B씨 부부는 수급이 가능한가?

(3) C씨는 38세이며 혼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파트타임 노동으로 150의 월소득이 있지만 자녀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빠듯하다. 보증금 2천에 월세 20인 집에 살고 있다. 부모님은 만 65세 넘으셨고, 월 470의 소득이 있다.

(4) D씨는 경증장애인이며 유년기를 생활시설에서 보내고 성장하여 탈시설하게 되었다. 자립하기 위해서 수급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 부모님의 소득으로 안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할까?

함께 풀어보기

(1) 본인은 소득X 재산은 기본재산액 이하라서 통과.

부양의무자가 2인이고, 수급자가 1인일 때 소득기준은 369만원.

현재 소득이 380만원인데 의료비 지출을 인정받으면 360만원.

재산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2억2800만원 이하라서 통과.

질병에 대해서 '근로능력 판정용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능.

다만, 생계급여는 아래와 같이 부양비를 차감하고 지급됨.

2인가구 중위소득이 299만원이므로 $(360-299)*0.1=6$ 만원

(2) 34세 이상인 누나는 가구원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님은 2인가구이다.

B씨 부부는 중증장애인이므로 2020년부터 바뀐 제도에 의하여,

부모님이 월 834만원이하의 소득이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재산이 9억 이하라고 보고).

그러나, 의료급여는 기준을 여전히 따지므로 살펴봐야 한다.

2인가구 중위소득은 299만원이므로, $(700-299)*0.3=$ 약 120만원

B씨 부부가 소득이 없어도 약 120만원의 소득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2인가구 의료급여 기준선인 119만원을 초과하여 수급불가.

(3)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지만 30세 이상이므로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진다.

우선 C씨의 가구를 보면, 3인가구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116만원이라 안 되지만 의료급여는 154만원이라 가능성이 있다.

부모님 소득 $(470-299)*0.15=25.65$ 만원

부모님이 노인이고, 자녀가 취약계층이므로 15%만 부양비로 계산한다.

합산하면 약 175만원이라,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기준선인 174만원을 초과하여 수급이 불가하다.

(4) 가정해체 또는 시설에 가게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서술이 담긴 소명서, 시설장 의견서, 지출실태조사표, 1년 간 입출금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유기, 가출, 학대 등의 사유가 있고 연락할 시 문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부양의무자 조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인가?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요건을 말한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핵심은 다른 가구에 속한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따지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과 소득을 같이 향유할 잠재적 가능성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수급자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뿐만 아니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은 부양의무자와 그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의 규모, 그리고 그러한 재산과 소득을 같이 향유할 잠재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수급 진입 단계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그러나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자신의 지배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항이므로 이를 급여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당장 생계가 급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일수록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폭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러한 사각지대의 주범이라는 데에 시민사

회, 학계와 정부 내에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역시 한국의 규약 이행현황을 심의한 결과를 발표한 2017년 10월 9일자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일부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자격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려는 당사국의 의도에 주목하며, 이와 동시에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회보장혜택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정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하며 “위원회는 사회 보장 급여의 적격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19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기 위해서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 중 급여별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먼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탈락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9.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기준보다 많다’고 응답한 가구가 29.39%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탈락 사유의 비중 또한 생계급여와 같은 순서로 나타났는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51.10%,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26.99%였으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41.32%,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가 32.8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은 약 9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요약하면, 문제와 원인에 대한 진단은 이미 나와 있다. 원인을 파악하면 제거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음 순서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조치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드문드문 개구멍을 내고 알아서 찾아가라는 정도의 방안에 불과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2020년부터 수급자 가

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를 매우 제한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꼭 집어서 뽑아내는 핀셋식 처방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수급자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아닌 그 부양의무자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본질적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계가 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이 그나마 한 걸음 나아간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필요한 가구에 주거급여만을 제공하는 것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7월에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주요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4월 16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후에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금까지 단행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조치들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임기 중반부를 훌쩍 넘어선 현재까지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 7월 말 의결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긴다지만, 정부는 벌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듯한 태도를 보여 공약파기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 계획이 구체화되고도 전에 우려가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라는 말이 방증하듯,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체납하지 않더라도 아파도 진료 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야말로 긴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성과 소요 예산

손병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월 서울 봉천동에서 발생한 ‘탈북 모자 아사 사망’ 사건, 며칠 전인 11월 2일 서울 ‘성북구 네 모녀 사망’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예이다. 탈북 모자의 집에는 쌀 한 톨 없고, 빈 간장통과 통장 3개만 남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3,858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였다 한다(여현교, 2019.10.11.). 70대 노모와 40대 딸 셋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도 경제적 어려움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우편함에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우편물이 10여 통 있었으며, 월세도 2-3개월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환, 2019.11.4.).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빈곤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적된다. 소득이나 재산상으로 아무리 빈곤해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5년 말 현재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빈곤하지만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김태완 외, 2017).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그 이유와 예상되는 소요액을 추산해 보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왜 필요한가

첫째,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빈곤한 피부양자에게 잠재적으로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을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에서 배제한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는 잠재적 부양가능성이 실질 소득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부양의무가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이행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부양의무가 실제 이행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민법상의 부양 받을 권리가 실제 소득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확정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김지혜, 2016). 그런 점에서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근거로 부양의무를 강제화하는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의 공백을 야기함으로써 헌법 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떤 집단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김지혜, 2016). 그런데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라는 가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선정에 차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여 빈곤하다는 점은 동일한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지만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권자는 기초보장 급여 수급에서 탈락하고, 반면 그러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권자는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 기준은 헌법상의 기본 원리와 몇몇 측면에서 충돌한다. 이는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사적 부양의 축소, 잠재적 수급자의 재산처분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확산, 수급자의 증대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따른 여러 역기능이나 부담은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

이지, 그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정당한 근거는 아니라 하겠다.

둘째,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편적이지 않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적 부양을 강제화하는 법적 조치이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제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 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조항이 공공부조제도에 있던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다. 이들 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여유진 외, 2017). 먼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공공부조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12권인데, 그것의 2조(2)에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할 국가 외의 다른 주체가 존재할 경우, 그들의 의무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증조부모-손자녀 등과 같은 직계 가족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들이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2003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법을 개편하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대폭 올림으로서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그러한 조치가 노인빈곤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Becker, 2007). 이처럼 독일 공공부조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여,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

일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랫동안 공공부조제도에 포함하여 운용해온 국가로 알려져 있다. 1929년 제정된 구호법 및 1946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가 있어 이들이 실제 부양을 제공하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1950년에 제정

된 현행 생활보호법부터는 실제 부양을 하지 않는데, 단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보호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존재에 따른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이유로 빈곤한 수급권자를 공공부조제도 급여 수급에서 강제로 제외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도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목상의 원칙이지, 그러한 원칙이 생활보호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오늘날 공공부조제도에서 사적 부양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부조 급여 수급에서 제외하는 선진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중 어떤 제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 자격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공공부조 성격을 갖는 제도들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지원제도,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들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는 제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제도이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들은 모두 기초보장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는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등은 대상자 선정 자격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만 사용할 뿐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들 중 자격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적용하는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도 자격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기초보장제도의 생계, 의료급여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적 부양은 보편적이지 않다.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적 부양이 보편적이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적 부양은 인류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이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표 2-1>은 세계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노인 가구주 가구 소득에서 사적 부양을 의미하는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살펴본 것이다. 노인 가구주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이 떨어지므로, 다른 사람이나 또는 사회에 의존하여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사적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2-1> 노인가구주 가구의 특정 가구소득별 대비 사적 이전소득 비중 국가 간 비교

국가	연도	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사적이전소득 /총소득	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대만	2013	57.36	38.37	42.18
한국	2014	31.27	17.04	17.63
페루	2013	22.55	18.19	18.23
콜롬비아	2013	18.99	14.84	16.49
파나마	2013	21.46	11.27	11.35
폴란드	2013	22.28	2.58	2.64
남아공	2012	6.19	1.89	1.90
이스라엘	2012	3.93	1.30	1.39
그리스	2010	4.20	0.92	1.04
스페인	2013	2.40	0.89	0.90
룩셈부르크	2013	2.27	0.81	0.87
에스토니아	2010	3.19	0.48	0.49
호주	2010	2.20	0.38	0.38
독일	2010	0.88	0.37	0.38
덴마크	2010	2.72	0.26	0.35
미국	2013	0.89	0.31	0.33
브라질	2013	0.67	0.27	0.27
네덜란드	2010	1.35	0.20	0.24
캐나다	2010	0.67	0.18	0.19
영국	2013	0.70	0.18	0.18
슬로바키아	2010	1.25	0.17	0.17
아이슬란드	2010	0.39	0.10	0.11
일본	2008	0.18	0.07	0.08
핀란드	2013	0.99	0.04	0.04
아일랜드	2010	1.05	0.04	0.04

자료: LIS 데이터 분석결과이며, 한국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분석결과임

<표 2-1>을 보면,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뿐이고, 사적 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도 25개 국가 중 대만, 한국, 페루, 파나마, 폴란드 등 5개 국가뿐이다. 사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주 가구 가처분 소득의 10%를 넘는 국가도 대만, 한국,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5개 국가 뿐이다. 가구 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한국과 대만만 1인당 GDP가 2만 달러(2019년 기준)를 넘는 비교적 발달한 국가이고, 파나마와 폴란드의 1인당 GDP는 1만 5천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페루와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약 7천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늘날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가구주 가구소득에서도 의미 있는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한국, 대만 등 몇몇 국가에 불과하며,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는 산업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된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선진국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아래 <표 1>에서 2019년 현재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의 노인 가구주 가구 가처분 소득 중 사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나머지 국가들 대부분에서 사적 이전 소득은 노인 가구주 가구 소득(가처분 소득 기준)의 1%도 안된다. 일본과 같이 아시아 국가도 노인 가구주 가구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된다. 이처럼 오늘날 발전된 사회에서 사적 부양은 보편적이지 않다. 사회복지의 발전과정 내지 사회의 발전과정을 보면 사적 부양이 축소되고, 공적 부양이 확대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동아시아 국가와 같이 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보편적인 사회변화의 경향하에서 존재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보장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한다.

<표 2-2>는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 빈곤 가구 간 생활곤란을 경험했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2-2>를 보면,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 빈곤 가구가 생활곤란을 경험

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보장 수급가구와 비교하여, 생활곤란을 경험한 비율이 2-4배 가량 더 높다. 이러한 사실은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 가구들이 기초보장 수급 가구들보다 더 열악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2> 수급·비수급빈곤층 집단별 생활곤란 경험 여부

<표 III-7> 수급·비수급빈곤층 집단별 생활곤란 경험 여부

생활곤란 경험	집단 유형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29%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40%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50%	소득평가액 기준중위 소득 29% (재산 13,500만 원 이하)	소득평가액 기준중위 소득 50% (재산 13,500만 원 이하)
1년 중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있음	6만 가구 (4.5%)	1만 가구 (11.6%)	1만 가구 (5.3%)	1.3만 가구 (3.8%)	1만 가구 (8.7%)	1.4만 가구 (2.8%)
	없음	128.1만가구 (95.5%)	8만 가구 (88.4%)	18만 가구 (94.7%)	33.1만 가구 (96.2%)	11.1만 가구 (91.3%)	48.6만 가구 (97.2%)
1년 중 돈이 없어 공과금(사회보험료, 전기·전화·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있음	5.7만 가구 (3.1%)	1.8만 가구 (7.2%)	4.1만 가구 (6.6%)	5.4만 가구 (5.8%)	2.7만 가구 (7.3%)	8.6만 가구 (5.9%)
	없음	172.1만가구 (96.9%)	23.4만 가구 (92.8%)	58.4만 가구 (93.4%)	89.3만 가구 (94.2%)	34.8만 가구 (92.7%)	137.1만가구 (94.1%)
1년 중 돈이 없어 전기·전화·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못 내 전기·전화·수도 등이 끊긴 경험	있음	6천 가구 (0.3%)	5천 가구 (2.0%)	5천 가구 (0.8%)	5천 가구 (0.5%)	5천 가구 (1.4%)	5천 가구 (0.3%)
	없음	177.2만가구 (99.7%)	24.7만 가구 (98.0%)	62만 가구 (99.2%)	94.2만 가구 (99.5%)	37만 가구 (98.6%)	145.2만가구 (99.7%)
1년 중 돈이 없어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경험	있음	3천 가구 (0.9%)	0	2천 가구 (7.3%)	7천 가구 (11.7%)	0	7천 가구 (4.6%)
	없음	34.6만 가구 (99.1%)	1.2만 가구 (100%)	1.9만 가구 (92.7%)	5만 가구 (88.3%)	1.8만 가구 (100%)	13.8만 가구 (95.4%)
1년 중 돈이 없어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있음	4.8만 가구 (2.7%)	3.4만 가구 (13.4%)	6.8만 가구 (10.8%)	6.8만 가구 (7.2%)	4.3만 가구 (11.5%)	8만 가구 (5.5%)
	없음	173만 가구 (97.3%)	21.9만 가구 (86.6%)	55.7만 가구 (89.2%)	87.9만 가구 (92.8%)	33.2만 가구 (88.5%)	137.7만가구 (94.5%)
1년 중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	있음	4만 가구 (2.2%)	1.5만 가구 (5.8%)	2.9만 가구 (4.6%)	3.3만 가구 (3.5%)	1.8만 가구 (4.9%)	4만 가구 (2.7%)
	없음	173.8만가구 (97.8%)	23.7만 가구 (94.2%)	59.6만 가구 (95.4%)	91.4만 가구 (96.5%)	33.7만 가구 (95.1%)	141.7만가구 (97.3%)
1년 중 가구원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있었던 경험	있음	16.8만 가구 (9.4%)	5천 가구 (2.1%)	1.1만 가구 (1.8%)	2.7만 가구 (2.9%)	1.3만 가구 (3.4%)	4.4만 가구 (3.0%)
	없음	161만 가구 (90.6%)	24.7만 가구 (97.9%)	61.3만 가구 (98.2%)	92만 가구 (97.1%)	36.2만 가구 (96.6%)	141.3만가구 (97.0%)
1년 중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보험급여 자격 정지당한 경험	있음	3천 가구 (0.6%)	6천 가구 (2.7%)	1만 가구 (1.6%)	1만 가구 (1.0%)	6천 가구 (1.8%)	2만 가구 (1.4%)
	없음	59만 가구 (99.4%)	23만 가구 (97.3%)	61만 가구 (98.4%)	94만 가구 (99.0%)	35만 가구 (98.2%)	144만 가구 (98.6%)
계		178만 가구	25만 가구	62만 가구	95만 가구	38만 가구	146만 가구

- 주 1) 집세 밀린 경험은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나 무상일 경우 비해당이므로 분석 제외 대상
 2) 자녀 공교육비를 주지 못한 경험은 무자녀 혹은 미취학·대학원생 자녀인 경우 제외 대상
 3) 건강보험 미납 경험은 1년 내내 의료급여 대상자 동일 경우 제외 대상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현재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되어, 완전한 폐지의 기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자격조건으로 남아있는 기초보장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뿐이다. 제1차 기초보장 종합계획에 의하면(관계부처 합동, 2017.8.10),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일부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과 관련한 대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이며, 단지 완성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며,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2015년 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이 100% 기초보장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약 7조 3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손병돈 외, 2016).²⁾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의 경험을 볼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 비수급 빈곤층이 신규 기초보장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채 50%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³⁾ 그런 점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소요되는 앞의 재정 추정치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실체는 이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이제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 중 하나였다(손병돈 외, 2013).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기초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의 예산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가 증가해온 폭도 훨씬 크다. 그런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로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면, 먼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그에 따른 예상 소요액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 소요되는 1년 예산액은 약 1조 3천2백5십억 원으로 추정된다(손병돈, 이원진, 한경훈, 2018). 이 추정치도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이 100%로 신규 수급자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것이다.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경험을 본다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해도 비수급 빈곤층 전부가 신규 수급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 공공부조의 경험을 봐도 빈곤층의 공공부조 수급률은 많아야 70% 내외 수준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액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그와 관련한 정책들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한국형 실업부조를 2019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빈곤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도 앞의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아동수당의 실시 등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도 아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충분하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서 부적합 또는 급여중지 된 (세대주가 1개월 이상) 부산지역에 거주한 자 중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1인 대상가구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140~170%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	4,421,099	6,281,258	6,402,837	7,632,872
재산기준	4억 5천만원			

□ 지원내용

○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1인 79,000원 ~ 210,000원 // 2인 134,000원 ~ 359,000원

3인 174,000원 ~ 464,000원 // 4인 213,000원 ~ 569,000원

○ 부가급여 :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가구

1인 26,000원 ~ 52,000원 // 2인 44,000원 ~ 89,000원

3인 58,000원 ~ 116,000원 // 4인 71,000원 ~ 142,000원

	현행 기초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일반 자격요건	수급권자(=모든 국민). 소득인정액이 <u>급여종류별 선정기준</u>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u>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u> (단, 교육/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2013년 7월 시행. 2018년부터 의무거주기간 삭제.	시행 2016년 10월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함. (2017년까지 의무거주기간이 6개월이었음.)
본인의 소득	①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②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③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5% ④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중위소득의 43% 이하일 것 1인가구 755,593 2인가구 1,286,511 3인가구 1,664,348 4인가구 2,042,145 (※ <u>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u>)	2016년 중위소득 30%로 시작. 2017년 중위소득 35%이하일 것. 2020년 중위소득 40% 이하일 것.
본인의 재산	·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액 6,9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인 경우 1억원)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적용 ① 일반재산: 4.17% ② 금융재산: 6.26% ③ 주거용재산: 1.04% (1억2천까지 한도, 이후는 일반재산으로 취급)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소득환산액 100%인 자동차 없을 것 ※ <u>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u>	가구당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적합가구 (부채를 제외한 재산, 자동차기준은 기존의 기초법에 의하며 재산으로 산정)
부 양 의 무 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 ※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의 재산 : 기본재산액을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18% 이하일 것 (1인가구 기준 약 2억 4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는 부양능력 없음. (A*40%)+(B*100%) 이하인 경우는 부양비를 산정한 후 지원함.	- 소득기준 : 1인 4,749,174 2인 5,983,960 3인 6,862,557 4인 7,741,154 - 재산기준 : 6억	- 소득기준 : 1인가구 4,421,099 2인가구 6,281,258 3인가구 6,402,837 4인가구 7,632,872 - 재산기준 : 4억 5천만원(재산 종류구분 없이 총액으로, 가구원수 구분x)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유지비 1인 87,860원 ~ 263,579원 2인 149,599원 ~ 448,797원 3인 193,529원 ~ 580,587원 4인 237,459원 ~ 712,376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급여 없음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유지비 1인 79,000원 ~ 210,000원 2인 134,000원 ~ 359,000원 3인 174,000원 ~ 464,000원 4인 213,000원 ~ 569,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급여 1인 26,000원 ~ 52,000원 2인 44,000원 ~ 89,000원 3인 58,000원 ~ 116,000원 4인 71,000원 ~ 142,000원
해당 인구수	2015년 기준 1,014,000 가구, 1,646,000명	- 2017년 기준 5,100가구 6,00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예측 : 2,000~2,250가구 - 실제 비수급빈곤층 : 4만 8633가구
예산규모	16년 생계·해산장제급여 예산 기준: 국비 3조 2,917억원 지방비 7,847억원 총 4조 764억원	2019년 기준 191억 840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초기 55억원(교육장려금 49억원+시비 6억) 2019년 기준 36억 4000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기초법 상으로도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재산특례로 1억원이 기준임. - 수급자 가구원수가 4명인 경우, 사실상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의 효과가 크지 않음. - 주거급여 기준선보다 본인 소득기준이 엄격함. - 지원액이 실제로 생계를 보장할 수준이 되지 못함.

<비수급 빈곤층 권리찾기 프로젝트 BEYOND> 상담기록지

상담일시	년 월 일	상담자		상담장소	□방문() □전화 □기타()
------	-------	-----	--	------	-------------------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만 나이)	
	연락처					
	수급여부	□일반 □조건부 □기타 □부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소득 /가구재산	원 원
	주거	□자가(만원) □전세보증금(만원) □무상거주(관계:) □월세(보증금 만원/월세 만원)				

신청인 가구사항	가족형태	□독거노인 □노인부부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기타()				
	관계	나이	소득	자동차	근로능력 및 건강상태	
				□있음(cc/ 연식) □없음		
				□있음(cc/ 연식) □없음		

	관계	가구원수	소득	재산	건강상태/ 근로능력	실질부양여부	부양비
부양 의무자 및 세부상황		명	만원/월			□예 □아니오	만원/월
		명	만원/월			□예 □아니오	만원/월
		명	만원/월			□예 □아니오	만원/월
		명	만원/월			□예 □아니오	만원/월
		명	만원/월			□예 □아니오	만원/월
		명	만원/월			□예 □아니오	만원/월

후속조치	□정보제공 □신규신청 □재신청 □이의신청 □기타() -
------	------------------------------------

사례관리 개인정보 동의서

- ‘비수급 빈곤층 권리찾기 프로젝트 BEYOND’(이하 BEYOND)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해 당사자들의 권리를 높이고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조직입니다.
- 아래의 목적 이외에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부산반빈곤센터와 BEYOND팀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 자료가 본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정책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0. . .

성명: _____(인)

후견인: _____(인) / 보호자: _____(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이용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신청 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의 사항을 안내드리고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보호구분, 대상구분, 연락처(집전화, 휴대전화 중 택1)	BEYOND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관리	회원 탈퇴 후 즉시 삭제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 필요 시 제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BEYOND팀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필수사항)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선택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소, Email, 참여경로,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및 연락처	BEYOND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관리	회원 탈퇴 후 즉시 삭제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 필요 시 제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BEYOND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관리는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선택사항)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사진, 영상	BEYOND팀 사업 홍보 및 정책활동	촬영 시 부터 3년 (문서관리규정에 의함)

※ 위의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BEYOND팀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필수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및 제공정보·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 아름다운 재단 · 지자체	· 사업 관리 및 보고 · 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시 업무 협조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보호구분, 대상구분, 연락처 선택 : 주소, Email, 참여경로, 법정대리인 이름 및 연락처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 까지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BEYOND팀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작성일

2020-__-__

신청자

(서명)

비수급 빈곤층 권리찾기 프로젝트팀 / 부산반빈곤센터